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안 번호 684

제 출 일 : 2025. 4. 4.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여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남양주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시의 권리승계 및 보상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 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처분·관리 및 보상 규정
- 직무발명, 자유발명, 발명자 등의 개념 정의
- 직무발명의 권리 및 신고 (안 제3조~제6조)
-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사항
- 특허 출원 및 등록 (안 제7조~제11조)
- 시 명의로의 특허 출원에 관한 사항
- 특허권 등의 재산등록, 발명자에 대한 통지, 등록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지식재산권 처분 및 보상금 (안 제12조~제18조)
- 시유지식재산권 처분의 원칙·방법에 관한 사항
- 시유지식재산권 등록 전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 처분보상금의 지급, 처분수입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규정사항 (안 제19조[~]제26조)
- 특허권 등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보상금 반환 제외에 관한 사항
- 타 보상금·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시 소속 공무원 등의 자유발명의 권리승계에 관한 사항
- 발명자의 의무·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 부서협의결과
 - 1) 협의기간 : 2025. 2. 18. ~ 2025. 2. 19.
 - 2) 협의결과
 - 비용추계 : 협의완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입법예고 결과
 - 1) 예고기간 : 2025. 2. 27. ~ 2025. 3. 19.(20일)
 -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남양주시에 소속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발명"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과 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 하는 발명을 말한다.
 -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 3. "발명자"란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 4. "시유지식재산권"이란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저작권, 실용 신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식재 산권을 말한다.
 -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식재산권의 매각

- 나. 특허, 저작물등록,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품종보호(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 다.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97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1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99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른 양도
- 라.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 6. "처분수입금"이란 시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시는 공무원등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시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

- 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을 포함한다.
-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5조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이 실용적 가치 및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해당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발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③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 제7조(특허등의 출원) ① 제6조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등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

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등의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발명자가 특허등의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특허권등의 등록) 시장은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 권등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권등의 재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특허권등의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 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특허권등에는 매 권리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저작권: 50만원

3. 실용신안권: 50만원

4. 디자인권: 30만원

5. 품종보호권: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 제12조(처분의 원칙) ①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시의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13조(처분의 방법 등) ①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 ② 시유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1. 시유지식재산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
 - 3. 전용실시권자의 사용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해당 전용실시권자 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 4. 천재지변, 전시, 사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입찰

- 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 5. 개별법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 6.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14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기간, 조건 등에 관해 발명자 또는 발명자가 속한 기관이나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등록 전의 처분) ① 시장은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처분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 및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시유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등을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7조(처분수입금의 처리) 시유지식재산권등의 처분수입금은 시 세입

으로 한다.

- 제18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11조와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1조와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 ③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당 발명자의 법정상속인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9조(보상금의 반환 제외) 시유지식재산권의 권리자와 그 상속인에 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위·도용 등 부정한 행위와 재판 등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20조(중복지급 금지)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은 시에서 지급하는 다른 보상금·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1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1. 직무발명·자유발명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 2.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22조(자유발명의 권리승계)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 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절차를 준용한다.
- 제23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과 실시에 있어서 시 및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24조(비밀유지) 발명자나 시유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소관 관·과		정책기획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과장 문 길 모		
	팀장 직위·성명	정책팀장 이 유 헌		
	담 당 자 성명·전화	장 혜 연 (031-590-702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11조(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특허권등에는 매 권리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저작권: 50만원

3. 실용신안권: 50만원

4. 디자인권: 30만원

5. 품종보호권: 100만원

- 제16조(처분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 및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시유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2. 미 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 첨부 사유

등록 · 처분보상금은 직무발명의 신고 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승계 결정과 특허청의 등록 결정 과정을 거쳐 시유재산으로 등록이 완료되어야 지급 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등록 · 처분 건수 및 금액을 예상하기 어려움

※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경기도 내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연평균 예산편성 금액은 10,000천원 미만

4. 작성자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정책기획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5A경기남양018)

- 1. 정책기획과-1457(2025. 2. 18.)호와 관련입니다.
-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정안」의 성 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5A경기남양018) 1부. 끝.

남 양 주 시 장

주무관	이연희	여성정책팀장 홍주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전결 2025. 2. 19. 복지국장 양현모
협조자				
시행 여성	아동과-6495	(2025. 2. 19.)	접수 정책기획과-1490	(2025. 2. 19.)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	시 경춘로 1037, (금곡동), 여	성아동과 / http	://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3965	팩스번호 031-590-2269	/yhlee0127@korea.kr	/ 비공개(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남양018				
정 책 명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정안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소관부서	부서명	정책기획과			
	담당자명	김해령	전화번호	031-590-702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2월 1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정책기획과)	 ○ 남양주시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호 및 장려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과 합리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및 특허권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시유지식재산권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 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남양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연희/031-590-3965)

정책기획과장 귀하

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정책기획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5-18)

정책기획과-1458(2025.2.18.)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 가 결 과 : **원안동의**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각 1부. 끝.

감 사 관

청렴윤리팀 2025. 2. 19. 주무관 **김주현 _장 이정주 ^{감사관} 문경석**

협조자

시행 감사관-1938 (2025. 2. 19.) 접수 정책기획과-1495 (2025. 2. 19.)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2079 / sjh99006@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남양주-18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가담당 직급 및 성		행정7급 김주현	
입 안 부 서	정책기획과		입안담딩 직급 및 성		행정9급 김해령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5. 2. 19.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런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_		_		_		

2025년 2월 19일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

(담당자 / 연락처 : 김주현 / 031-590-4719)

정책기획과장 귀하

붙임4 규제심사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정책기획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정안)

- 1. 남양주시 정책기획과-1458(2025, 2, 18.)호와 관련됩니다.
- 2.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 제정안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우리 시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하여 발명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필요 시, 시에 귀속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 3.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규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제2조) 끝.

의 회 법 무 과 장

대결 2025. 2. 18. 주무관 의회법무팀장 규제개혁팀장 조현기 인재현 김설 협조자 시행 의회법무과-2124 (2025. 2. 18.) 접수 정책기획과-1483 (2025. 2. 18.)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7320 팩스번호 031-590-2900 / hgj1235@korea.kr / 비공개(5)

붙임5 입법예고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 1. 정책기획과-1748(2025. 2. 26.)호와 관련입니다.
- 2.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정안
 - 나. 예고 기간 : 2025. 2. 27. ~ 3. 19. (20일간)
 - 다. 예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라. 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의견제출 0건
 - 마. 향후 계획 : 제504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등 처리절차 진행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주무관 정책팀장 이유헌 정책기획과장 기획조정실장 **건결 2025. 3. 20. 7형서**

협조자 의회법무팀장 김설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시행 정책기획과-2443 접수

우 12140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234-46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7024 팩스번호 031-590-2059 / hyenn98@korea.kr / 대국민 공개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